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7. 18 선고 2017가단5183947 판결 [[소멸시효 연장을 위한]구상금
청구의 독촉]

전 문

원고한국무역보험공사

피고1. A 주식회사

대표청산인 B의 특별대리인 C

2. D

3. C

변론 종결2018. 5. 30.

판결 선고2018. 7. 18.

주 문

1. 피고 A 주식회사와 피고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각 124,994,100원 및 그 중 121,274,740원에 대하여는 2007. 3. 15.부터 2007. 4. 30.까지는 연 11%의, 그 다음날부터 2018. 2. 8.까지는 연 20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, 각 1,370,000원에 대하여는 2007. 5. 1.부터 2018. 2. 8.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피고 D는 피고 A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각 124,994,100원 및 그 중 121,274,740원에 대하여는 2007. 3. 15.부터 2007. 4. 30.까지는 연 11%의, 그 다음날부터 2018. 5. 16.까지는 연 20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, 각 1,370,000원에 대하여는 2007. 5. 1.부터 2018. 5. 16.까지는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망 소외 B로부터 각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피고 A 주식회사,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(다만, '채권자'는 '원고'로, '채무자'는 '피고'로 각 변경되었으며, 소외 E, F는 소취하로 종료되었다).

나. 적용 법조

(1) 피고 A 주식회사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(답변서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)

(2) 피고 D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(자백간주에 의한 판결)

2.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

갑 제1,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, 별지 청구의 표시는 인정된다.

이에 대하여 피고 C는 망 B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,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피고 C가 망 B의 재산을 상속하였다는 전제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, 피고 C가 독자적으로 피고 A 주식회사의 채무를 연대 보증하였다는 전제에서 구하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(갑 제1호증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. 11. 14. 선고 2007가합32004 구상금 판결 참조).

판사권순건

별지